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	과 장 박재훈 사무관 강희만	042-481-8321 042-481-5400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9년 1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1월 1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·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

- 중국,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금년 1월 실시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한·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(CSP: Collaborative Search Program)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(교차출원)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,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심사하고,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.
 -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고, 빠르게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.
-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(CSP)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, 현재 한국과 미국, 및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중에 있으며,
 - 한·미 간 시행해 본 결과('15.9~),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.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.3개월 단축되고,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(68.6%)건 대비 13.3%p 증가하여, 고품질의 예측 가능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,

- 한·미는 이를 바탕으로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 ('18.5),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, 독일,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, 인도,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.

□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.6%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.

* '17년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특허출원 국가: 미국(1위, 35,565건(52.9%)), 중국(2위, 13,180건(19.6%)), 유럽(3위, 6,455건(9.6%))

- 이번에 한·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, 중국에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중국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·2위인 중국,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다.”라고 밝히며,

- “앞으로 본 프로그램을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, 인도, 아세안 등으로 확대하여,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덧붙였다.

□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(www.kipo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(042-481-5400)로 하면 된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강희만(☎ 042-481-5400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□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(Collaborative Search Program; CSP)

-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
(교차출원)한 경우, 출원인의 신청
으로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
조사결과를 공유하여 빠르게 심사

※ 한·미('15.9월 ~), 미·일('15.8월 ~),
한·중('19.1월 ~)



□ 기대효과

- 양국 간 선행기술 조사결과 공유로, 양국 심사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향상
- 신속한 심사 수행으로,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획득 가능
- 상대국 선행기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, 특허청의 심사부담 감소

□ 신청방법

-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(www.patent.go.kr)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○ 신청요건

-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(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)이 동일할 것
-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
-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
-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
-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
- ⑥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